

부산지방법원 2024. 6. 7 선고 2023나522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6. 7 선고 2023나5226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1 선고 2020가단36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김종운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호인

변론 종결 2024. 5. 3.

판결 선고 2024. 6. 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1. 선고 2020가단36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 4. 8. 접수 제10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호

판사박우중

판사이광영

별지